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지급급: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 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 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5. 무보험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처량, 「도로교통 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
 - 라. 피보험지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 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¹⁾ 또는 정비⁽²⁾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 로다일기⁽³⁾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¹⁾하거나 장비⁽²⁾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시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2) 정비: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 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하이패스 단말기)
-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죄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죄(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죄(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 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2호)
-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0. 의무보험: 「자동차순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온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재(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 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 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치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재/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 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재(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를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기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 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시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인명보호장구: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를 말합니다.
 - 다.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 합니다.^(*)
 - (*i)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라이더지켓·팬츠·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이류는 제외)
 (*2) **정착**: 볼트, 너트 동으로 고정되어 있아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3)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너, 카메라, 음성재생기(C)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
 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패 등
-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치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8. 보험가액
 -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기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기액을 말합니다.
- 19. 미약·약물운전: 미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0. 대체폐차 : 대체폐차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또는 제33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

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자동차로 대체등록을 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차 로 대체등록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것으로서 차종 및 등록번호가 동일 하게 대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영업용지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문배상 II」, 「대문배상 II」,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5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 1.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 자는 「대인배상 I」, 「대일배상 II」,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 에 한학)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임의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3. 피보험자동차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 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준용하여 보상합니다.
-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대인배상ㅣ」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Ⅱ」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 배상 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공동물건 요율 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구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제2편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1

-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 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안배상 |]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친족피보험자
 - 3. 승낙피보험자
 - 4. 사용피보험자
 - 5. 운전피보험자
-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 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 []와 대물배상

-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 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학)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친족피보험자
 -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4 사용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II」와 「대 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 난 손해
-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II」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 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 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사용, 관 리하는 재물을 포함)
- 기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시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 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 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 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 ④ 제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항에 따라 피해자에 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시항

-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항 제호, 제6호, 제8호 및 제3항 제6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 제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1.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 2.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싱하여야 할 금액'

비용

공제액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¹⁾**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항의 '보험금자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 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소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기급조치비용을 포함)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대인배상I」: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I」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2. 「대물배상」: 사고치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 (*1) '법원의 확정판결 등 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 제1조(음주운전, 무면하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하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하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한도 내 지급보험금
 - 2 「대인배상 II」: 1시고당 1억원
 - 3. 「대물배상」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 나. 「저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기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미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 치의무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 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 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고 미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제13조(피보함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7조 「대인배상 II」의 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재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하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7.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8.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위치에 탑승 중 생긴 손해
-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함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5) '자가산체 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5〉 '자가산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기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기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재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시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 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 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1. 실제손해액은 〈별표〉〉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 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4. 다만, 제강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 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 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자기차량손해

- 제17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 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 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 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 '경미한 손성'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기능한 손 상을 말합니다
 - (*2)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다른 자동차⁽¹⁾와 충돌로** 인한 손해. 단, 다른 자동차의 처량 등록번호와 운전재(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경우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中紀天화'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처롱,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정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제18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치량손해」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5.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 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 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 (†) '가에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정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피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산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¹⁾**
 -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1) **일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헌험)를 포함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지급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 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긴 손해액 + 비용 - 자기부담금

- 1.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 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2)}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 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 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함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피 보항자동차의 단독사고/하자불량사고 포함 또는 알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가져봉손해」 또는 「자가져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금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에 따라 수리바의 알장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금하여 드립니다.
 - (*2) '중요한 부분'이라 함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3.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4.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기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자기처랑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 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액에서 당 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 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처랑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¹⁾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 (*1)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피손, 멸실 또는 오순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 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바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 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1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3.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 동차가 화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자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 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제22조(청구 절차 및 유의 시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일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3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1. 보험금 청구서	0	0	0	0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0	0	0	0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0	0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0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7. 피보현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사실증명서			0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		0	0	
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		0	0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 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 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0	0	0	0

- 제24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

- 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사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길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 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3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제25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 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시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 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 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지를 더하여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면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 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 로 계신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27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 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0
2. 손해배상청구서	0	0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0	0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 시진 등, 이 경우 수리개 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 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 하게 됩니다.)	0	0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 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 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 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
 - 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지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 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 제29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 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X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 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30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 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 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자기처랑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 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1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 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 제32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 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 의 · 절충 ·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현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 의 · 절충 · 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되(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 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 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 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 제33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2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불여자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제34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38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 제3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1. 사이버볼(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볼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 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세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면 단위 복리로 계사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통산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2) **지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 제36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로 등의 효력) ① 보험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시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등을 통해 확인받이야 하며, 설명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시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만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 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37조(창우)의 철회) ① 일반담용소비자⁴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전문금융소비자⁽²⁾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 보험에 기입한 경우는 제외)
 -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이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신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 력이 있는 자료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관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 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보험회 사에 지체 없이 일려야 합니다.
 -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회사가 재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 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회 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구 분	보험기간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 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 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1) '자동차보험이 처음 기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함자로 하는 자동차보함 에 기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함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중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39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지40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49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 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세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 을 승인하거나, 제49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시실
 -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제42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일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래(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 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 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현력

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제43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일리거나 보 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라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 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4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름니다
 -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라 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 제44조(피보함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 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제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 함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 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 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 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 구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시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 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 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제45조(피보함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 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 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 할 때에 상실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

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 ④ 제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치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사업용자동 차로서 2종3종 화물자동차 간 또는 개인택사개인소유 1종2종3종4종 화물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 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⑥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윤년·366)

- 제46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7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 제48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채(의무보험 가입대 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헌하여 운행하는 자동채로 변경된 경우
 -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4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5조(피보험 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 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5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5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기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 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 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 제할 수 있습니다.

- 제48조9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보험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만 해지할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는 제50조(보험료의 환급)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49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항의 시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 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 항에 내며으로 변경은 시청하네 보험하네가 이른 스이팅여운 때
 - 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괴한 때
 -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 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채액이 생기지 않은 때
 -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 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4. 보험회사가 제4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4 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5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5항에 따라 추가보험

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4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1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 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항 제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0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 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악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48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3. 보험계약이 해지(제48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 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 니다.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 2. 보험회사가 제46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49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운휴
- 1. 보험계약자가 노사분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휴업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한 때에는 그 운행중지 기간(이하 "운휴기간"이라 합니다)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운휴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운휴기간은 관계관청에 휴업신고가 된 날로부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시 신고가 된 날
 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가 있기 전에 보

- 험회사에 운행재개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접수하기 전날까지로 합니다.
- 3. 운휴기간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관계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운휴기간의 개시일자와 피보험자동차의 명세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신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운휴기간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운휴기간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운행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통지한 명세상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⑦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함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⑧ 보험회사가 제7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 제61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52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3조(제출 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2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 2, 계약일시, 보험증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 제53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 야 합니다.
- 제54조(에금보험가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 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 합니다.
- 제55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56조(분쟁의 조정)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 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

- 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제57조(관합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제58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영업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목차

제편 보험료 납입방법28
①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28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28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29
제'장 운전자 연령제한23
①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29
②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29
③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30
④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3
①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31
②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32
제3편 자기차량손해 관련33
1 기계장치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② 공작용 자동차에 관한 「자기치량손해」특별약관 ····································
③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전 자기(RS는데 건국시고 도움 목글국단
⑤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
☑ 시기시승은에 급구에 한승 그 승 먹을기만 ፡፡ ፡፡ ፡፡ ፡፡ ፡፡ ፡፡ ፡፡ ፡፡ ፡፡ ፡፡ ፡፡ ፡፡ ፡፡
제4편 긴급출동 서비스
①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
제5편 기타40
①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40
② 주차위반 피견인치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40
③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④ 전방충돌방지 장치 특별약관 ····································
5 차선이탈방지 장치 특별약관44

-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

①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제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 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보험증권에 기재 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함)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대인배상 | 」 및 「대물배상」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3조(분활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활보험료 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② 위 제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서면으로 안내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1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 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사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 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 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위 제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위 제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 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①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품(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입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 체사고」, 「자기차량손해」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 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 기차량손해」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②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 체사고」, 「자기차량손해」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민26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③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0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제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 체사고」, 「자기차량손해」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기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악관에서 **만30세 미만의 지**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④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3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5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 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 체사고」, 「자기차량손해」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랑손해」및「자기차랑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기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5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①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개 인택시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한 대리운전자는 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로 봅 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판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보성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②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승용, 대여다인승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 명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임차인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대여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① 임차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 ② 임차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임차인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에 한정)
 - ③ 임차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임차인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④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 2. 대여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 ① 임차인
 - ② 임차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 간에 한정)
 - ③ 임차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④ 임차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판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 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함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함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I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다.
- 제4조(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 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 차인은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임차인이 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제6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3편 자기차량손해 관련 -

□ 기계장치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 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 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공작용 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①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기 재의 공작용자동차(이하 "공작차"라 함) 캐터필레(컷팅엣치, 엔드빗드를 포함), 배토판 버킷 (딥퍼를 포함), 포오크, 삽날, 로울러 등 작업중 언제나 땅에 닿는 부분과 드로프햄어, 디이 젤햄어, 파일드라이버(재크,리이더 등을 포함) 등 사용의 목적에 의하여 교환장착하는 부분품 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작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는 코오드, 와이어, 호 오스, 체인, 드릴 등 적재부속품은 자동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 제1조(기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처랑손해'가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기입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 한 것에 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 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기 소해
 - 3. 피보험자동차가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경우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① 이 특별약판에서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
- 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서 '참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 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참수로 보지 않습니다.

-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판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판 제19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0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④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 또는 일방과실 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처랑손해」또는 「자기처랑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의해서 보 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단에서 'CDM/Criginal Equipment Menufacturing) 부종 이란 자동차 제조시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CDM 부품 공시가격'이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3황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 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만 「자기처랑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 또는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5조(보험금의 환입)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 어야! 합니다
 - ②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보상 내용)'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경우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 제6조(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OEM 부품으로 수리 가 필요하다고 팬단하는 경우

-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포함)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OEM 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 은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제조(가입대상) 이 특별악관은 피보험자동차가 1종 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에 의한 건설기계이고, 보통악관의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 기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및 「자기치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치량의 침수^(*)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 로 생긴 손해만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 (*1) 참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현지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를 개빙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참수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 한 것에 한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 재사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악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 이 외에 다음 각 항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 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¹⁾ 이외의 장소에 주차중일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물이

- (*1)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 이란 아래의 장소를 말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 및 주기가 허용된 곳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한 차고지
 -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가 허용된 곳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0조(지급보험금

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도 불구하고, '전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제4편 긴급출동 서비스 -

①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4종화물자동차, 1,4톤 이하의 3종화물자동차 및 대여승용, 법정승차정원 16인승 이하 대여승합자동차로서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 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 제3조(간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간급출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기.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 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 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 당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 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상급유	7. 피보함자동차가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기능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1일당 1회에 한하여 30 를 한도로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다만, 3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주유하여 드립니다. 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처량이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지된 경우는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가스총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10km 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함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 한하여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함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배터리충전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해당되지 않음)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리며, 배 터리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가. 피보험지동차가 타이어의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평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타이어퍼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아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 Run-테래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펑크와 같이 펑크 수리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3)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4)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5)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사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구분 작금장치해제	내용 가.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피보험자동차 실내에 열쇠를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정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트렁크 잠금정치 해제 나 외제 차량 및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 중 특수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 발라이저 등)가 정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전문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익뢰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때 전문업체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제공에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의 잡금장치 해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참금장치 해제서비스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액 / 엔진오일 / 파워오일 보충	다. 점금장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처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피보험자동차가 브레이크액,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브레이크액은 10 이내, 엔진오일은 20 이내, 파워오일은 10 이내로 하고, 기준량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비를 받고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파워오일 보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디에이터캡 교환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라디에이터캡의 파손 및 불량으로 엔진과열시 라디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 캡의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브레이크등 / 전조등 교환	피보험자동차가 브레이크등, 전조등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하는 전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등의 경우에는 실비를 받 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윈도우브러쉬 불량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앞쪽 운전석 윈도우브러쉬 고무부분을 새부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윈도우브러쉬 고무부분만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실비를 받고 윈도우브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휴즈 교환	기. 피보형자동차가 휴즈단락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즈를 교환하 여 드립니다. 다만, 엔진룸의 휴즈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나.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현장응급조치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한 차 량 고장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부동액보충	가. 피보형자동차가 부동액 부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을 보 충하여 드립니다. 나.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벨트 교환	피보험자동차가 도로상 주행 중 각종 벨트(팬벨트, 파워벨트)류의 절단 및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벨트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 만, 현장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DOHC차량, 2000cc이상차량 및 외제 차 량은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체하여 제공합니다.
긴급구난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구난하여 드립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번경 또는 작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료점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무료점검(엔진, 하체, 전기부분을 말합 니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지정 정비업체에 1~2일 전에 예약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서비스, 폐차대행서비스를 실비를 받고 대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
- 4. 외제 차량 및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한 경우,
- 5.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세이프티 로더 등)를 사용하여 구난하는 경우
- 6, 특수지역(산간, 해안, 갯벌 등)으로 일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불가능하여 특수장비(포크레인, 크레인, 트랙터, 사륜구동자동차 등)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 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제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 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적재물 의손상, 멸실등)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 간 중 총 5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그 횟수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 1. 보험기간이 1년이며,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에 과거 직전 2년 동안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가입하고, 직전 2년 동안 이 특별약판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7회
 - 2. 보험기간이 1년이며,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에 과거 직전 1년 동안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가입하고, 직전 1년 동안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6회
 - 3.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 3회
 -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판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서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서비스는 횟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자)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 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 1. 보험약관 「대인배상 I」이 종료된 때
 -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제5편 기타 -

①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제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I · II」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제2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집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판 「대인배상 I · II」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 II」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I · II」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3. 보통약관 제38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 I·II」 및 「대물배상」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 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4, 「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치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위 제항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 인에게 적용합니다.
- 제3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44조(피보험 자동차의 양도)규정에도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 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 명피보험자로 봅니다.
-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자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양수인은 위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제조(적용대상) 보통약관의 「대물배상」에 가입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차위반처량(이하 "피견인처량"이라 함)을 견인 개시한 때부터 차량보관장소로 인도한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처량을 멸 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그 피견인처랑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건안가시한 때라 함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연결장치로 피견인차량을 연결하여 견인동력장치의 작동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견인처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피견인차량의 시건장치 개폐작업으로 인한 손해
- 제4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 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제2호의 비용 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 (지연배상금 포함)
 -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9조94(특별시약공제) 제1항 제2호1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 이 되는 경우

용어풀이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나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 ① 법 제대9조의사제(항제(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 함 · 공제로서 보험 · 공제 제약 또는 보험료 · 공제료 납입경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 · 공제로 표시된 보험 · 공 제의 보험로 · 공제료를 밝혀 함
-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 중·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생명보험
 - 2. 상해보험
 -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5.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및「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 를 초괴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 를 말하다
-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 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경우

용어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이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이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이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항제·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이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항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류"라 합니다)을 제출하 여 제1조(적용대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류를 제항의 장애인 증명서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제3조(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1조(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1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제4조(잔환 취소) ①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회사에 요 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 ② 제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전환을 취소한 이후에는, 재전환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 ③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전환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 입된 모든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아닌 일반 보장성 보 험료로 표시됩니다.
-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④ 전방충돌방지 장치 특별약관

제조(기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전방충돌방지 장치를 장착한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전병충불반지 정치'라 함은 전방에 주행 중인 처랑과의 거리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전병충돌 경고장치'(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또는 경제물과 충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처랑이 자동으로 제동하는 '자동 비상 제동장치'(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를 말합니다. 다만, 차 랑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식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가능이 포함된 경우나 차량 출고 이후에 이와 유사한 가능을 가진 정치를 추가적으로 장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날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판 제4조(특별약판 계약의 취소) 및 제5조(특별약 관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 2. 회사가 전방충돌방지 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 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2조(특별악관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피보 험자동차에 전방충돌방지 장치가 처량 출고 시 장착되었음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회사가 요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전방충돌방지 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동 차 계기판 또는 작동버튼 시진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정보를 통해 피보험자 동차에 전방충돌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진을 전송하지 않 아도 됩니다.
-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전방충돌방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작동시켜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전방충돌방지 장치를 교체할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전방충돌방지 장치가 정상적 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1조(기입대상) 제2항의 기입제한 사항에 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 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전방충돌방지 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 제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차선이탈방지 장치 특별약관

제조/인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차선이탈방지 장치를 장착한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단에서 "차선이탈방지 장치"라 함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처로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를 알라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LDMS, Lane Departure Warring System) 또는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처로이탈을 방지하여 주행 처로로 자동 복귀하는 '차선이탈 자동복귀 장치" (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를 익미하며 처랑 내 부에서 그 가능을 확인 및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다만, 처랑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등 탈부칙이 가능 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차량 출고 이후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추가적으로 정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날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및 제5조(특별약 관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 2. 회사가 차선이탈방지 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 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피보 험자동차에 차선이탈방지 장치가 처량 출고 시 장착되었음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회사가 요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방지 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동 차 계기판 또는 작동버튼 시진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정보를 통해 피보험자 동차에 차선이탈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진을 전송하지 않 아도 됩니다.
-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방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작동시켜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방지 장치를 교체할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방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2항의 가입제한 시항에 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시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어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

- 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차선이탈방지 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화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영업용 까동차보험 〈별표와 붙임〉

〈별표 1〉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 ···································
〈별표 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54
〈별표 3〉 과실상계 등56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별표 5〉자7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57
〈별표 6〉「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58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붙임) 자동치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별표 1〉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

※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나이(연령)"는 사고발생일 기준 만 나이(연령)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각 모장공폭열	모엄/입금액 안노 내에서 나음의 금액을 시납함.			
항 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3. 상실수익맥	기: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기: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시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7)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시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 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 월처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을 내가 나는 이 등 이 배를 가 이 나는 다시 하는 보기 나는 그를 다.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작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중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기)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기로서 받은 보수액 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 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품이 ① '급여소독자'라 함은 소독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마'로 반은 보수'라 함은 분봉, 수당, 성괴급, 상여급, 체력 단련비, 연활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2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중방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방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가시자 또는 사망 작전에 보수액인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방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인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비율을 적용함			
	마음을 식중임.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항 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 는 일용근로자 임금 을 인정함.
	용어물이 ① 이 보험제약에서 시업소득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제약에서 일몽근로가 임금 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증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 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소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방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 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중사자는 통계법 제15 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 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 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총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물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 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 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암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 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시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재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재 복무예정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7)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6) 외국인

항 목	재급 기준				
3. 상실수익액	(가) 유직자				
v. 52177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 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 일 용근 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 용근 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다. 취업가능원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 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 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동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이나 '주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 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 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 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				
	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기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7) 점법한 일시체류자⁽¹⁾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				
	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 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 ⁽²⁾ 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 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 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 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하기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하기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하기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 는 방법				
	$-$ (산식) $ \frac{1}{1+i} + \frac{1}{(1+2i)} + \dots + \frac{1}{(1+ni)}$ $+ \frac{1}{(1+ni)}$ $+ \frac{1}{(1+ni)}$ $+ \frac{1}{(1+ni)}$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 손해배산보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균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손해배상보장	법시행령	[별표 1]여	에서 정	한 상해급별	별 보상한	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	급 기 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 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 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7)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 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 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 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치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차이보철비 : 금주조만보철(백금관보철 포함)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차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차이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자동차순해배상보장법 시행할 (별표) 에서 정한 성하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괴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항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로법에 따른 잔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가재된 치료가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2.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 3 4	200 176 152 128	5 6 7 8	75 50 40 30	9 10 11 12	25 20 20 15	13 14	15 15	
		상계 후 후약	유장애 성	상실수익액고	가정간	호비가 후유 보 부상 위자			I 도를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응어들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85 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 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항목	지 급 기 준			
3. 휴업손해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작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 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		
	(나) 설세의 수합검소액이 위 (가의 기 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	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어 로 하		
	용어풀이	- 0.		
	① 가시종시자 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	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 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으로 함.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시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고 (5) 외국인 시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고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102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히 경우 인정함.	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 마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달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 라 함은 진단서, 경 험화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 합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고 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			
	인정함. (3) 간병안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든(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앙자 중 많은 금약 지급함.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5급		30일 15일		
5. 그 밖의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소해배상금 가. 입시하고 지하고 자리 근데에 마당라드로 다음의 유리를 시합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까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한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원		

(주) 책임개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의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 손해배산보자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자애금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상애급		
항목	지 급 기 준		
1. 위 자 료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추유장에 판정 당시⁽¹⁾ 피해자의 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성용함. 해재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상실률 × 85% 해재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장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4) = 33 1322 1 1 1 1 2 3 1	(단위 : %, 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 미만	400 240 200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100 80	
	0 초과 5% 미만	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2. 상실수익액	기.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 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기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 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1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기능연한기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	과 동일	

항목	지 급 기 준
2. 상실수익액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 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 단・편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사명한 경우와 동일
3, 가장간호비	가. 인정 대상

〈별표 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

항목	지 급 기 준
1. 수리비용	기: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기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 미한 소상⁴⁷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소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 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²⁰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 경비한 소상 이 함은 외정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상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 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 ' 품질인증부품 '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와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2) 열처리 도장료 수리 시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약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약의 120%를 한도로 수리 시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약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약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건수⁴⁰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시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치랑총당연한을 적용 받는 승용 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회물자동차 운수시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치랑총당연한을 적용 받는 승용 자동차나 승합자동차
2. 교환가액	기: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기액을 초괴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기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기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기: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처량 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 ^{**(1)} 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라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2)} .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 ^{**(3)} 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구할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 ^{**(3)} 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가량, 면식이 우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가량, 면식만을 교려할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채예 : 하이브라드 차량, 다운사이장엔진 장착차 량에 대해서는 차랑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 *동신의 요금 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사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사망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가진(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중 ^{**(1)} 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 구분이 교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목반에 되었다면 사용하면 이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어자동차가 있는 처중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 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처종을 말합니다. (2)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

항목	지 급 기 준
3. 대 차 료	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치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면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로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성당액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자연이나 출고자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¹⁰) 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 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10일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신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기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지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 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 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 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채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가쥬액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7. 견인비용	가. 지급대상 파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이정되고요에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별표 3〉 과실상계 등

항목	지 급 기 준				
1. 과실상계	7.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하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무보함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함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I」에서 새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지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 I」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 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시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 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 I」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처럼운전자 (기가 '자동차은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 석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 I」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괴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 "처럼운전자"에서 채형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조에 의한 자동차(이론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채당 건설기계관리법의 작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채랑운전 지에는 폐화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지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자사고 과실비율의 적용인 곤란할 때에는 판결계를 참작하여 작용한,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장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7. 기왕중 ^(*) 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 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 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 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 '기왕중'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책임개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의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함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별표 5〉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20만원
5급	500만원	12급	120만원
6급	400만원	13급	80만원
7급	250만원	14급	50만원

주) 1.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보험기입금액			
등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2.} 책임개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의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별표 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7조 8조 위반시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1.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 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황단, 유턴 또는 후 진한 경우
-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4, 「도로교통법」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자시기·금자장소 또는 깨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하 또는 건설 기계조종사면하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하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하 또 는 건설기계조종사면하의 호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하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 하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하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받다.
-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9. 「도로교통법」제(3조제(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3조제(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12, 「도로교통법」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 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가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착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착수 손상을 동반한 청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성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송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4. 함상 · 좌창 · 교사장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증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만, 기판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 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상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 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젤(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대(완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 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즉판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2급	1,500만원	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인구 적출술 또는 인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통 또는 흥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결로 요도 성형을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성(장간)막 파결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을 등을 시행한 상해 10. 성안부 완전 절단(주관점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점부 골점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팀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수관점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속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촉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독근관점의 순상으로 폭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즉근부 완전 절단 소상으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독근관점의 순상으로 폭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즉근부 완전 절단 소식으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 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증출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 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성(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건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시상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착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2레이지 골절을 말한다) 12. 착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모데 지어 골절을 말한다) 12. 착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모데 지어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4급	1천만원	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 착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끔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 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하되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시상등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 5대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凹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성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뚜 또는 착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처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연물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절망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관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관절 및 달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점의 당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괴를 말한다) 22. 족관점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점 손생(리스프랑 관점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5급	900만원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 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 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 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성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성(일축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얼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룡 또는 기흥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건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건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금 대결점 견염 골점 13. 상완골 원위부 건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남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나를 포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건부 또는 원위부 관절의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건부 골절건의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증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대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남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축 또는 외축 축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원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즉관절 남주 또는 의축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7. 족관절 내축 또는 외축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8. 슬관전 남주 또는 외축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시작의 대학을 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1. 우관절 내축 또는 외축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상해 22. 작업 금액 또는 외축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상해 23. 시작하지 않은 상해 24. 수울을 시행한 상해 25. 나장하지 않은 상해 26. 작관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7. 족관절 내축 또는 외축 즉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상해 28. 기대하의 지의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병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병합한 상해 31. 의치 이상 22지 이하의 지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1. 의치 이상 22지 이하의 지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1. 의치 이상 22지 이하의 지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1. 의치 이상 62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7급	500만원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사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姚골 골절(건간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건봉물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건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시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청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착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거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요수근관절 탈건수는골 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성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물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거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내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발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고, 외과 또는 홍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주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독관절 내고,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위한 당기 않은 상해 26. 16차 이상 18차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성악골, 하악골, 지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룡 또는 기홍이 발생하여 폐쇄식 홍관 십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접(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건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10. 성완골 과상부 또는 성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고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점을 포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심지안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8급	300만원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시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녹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촉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판절 탈구, 원위 요착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그 밖에 건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이킬레스건, 슬깨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그 밖에 건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이킬레스건, 슬깨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차 이상 12차 이하의 차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약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2. 그 자에 '이라마' 의상 '이라는 이 이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판절부위의 회전근개 피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으는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판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지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안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가 4차이 감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가 4차이 이상 5차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 (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쪽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4. 공극을 제H	700
영역	냬용
굔통	기.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형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
	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 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두부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마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당종, 거미막 당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 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상,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가관지 삼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가. 14단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영역		내용
흉 · 복부		심장타백(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 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총족 시 인정한다.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상ㆍ하지	- Po	7.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 (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3 부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3 부등급 상의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3 부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축 또는 단축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자. 골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기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12급)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라.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기. 분쇄 골절을 영성하는 골잘선은 선상 골절이 이난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부에 때로 차이는 두지 않는다. 다. 그건 인내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다.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건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골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골 절 형에 적용한다. 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보스 사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과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과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작용한다. "다발성 혈관 손 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죽고 부가 오막이는 소등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을 말하다. "다발성 혈관 손 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 도점 등만 함께 수요된 모양한다. "다발성 혈관 손 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상지	7.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 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 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영역		냬용
상· 하지	하지	7. 양촉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을 골절로 보다. 다. 슬관절 심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촉 촉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촉부인대 파열. 반월 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촉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 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팀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의 인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1급	1억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가능과 음식물을 씹는 가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가능 또는 정신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 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산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소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 시로 보호를 받이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이야 하는 사람
3급	1약2천만원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 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산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6급	7,500만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모쓰게 된 사람 8. 한쪽 수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자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당기원 각이 보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모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당기의 구하면 장애가 남은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위한 한쪽 말을 작업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흥터가 남은 사람 13. 암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외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6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 ·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까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게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든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든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장애	하는 그애	시 ᆌ 자 에 내 유
급별	한도 금액	신체장애내용
9급	3,800만원	10. 한쪽 소의 업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업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업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업지받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가능 또는 정신가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홍복부 장기의 가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들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가 남은 사람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
11급	2,300만원	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시람 2. 두 눈의 눈꺼품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품에 끌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점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받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색품, 홍품, 녹류,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12급	1,900만원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아협착 또는 시아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까물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생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성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물자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산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10. 한쪽 발의 기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일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의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막는 한쪽이 가락 1개 당하이의 발가락 1하의 발가락 1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일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당한 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당한 하의 발가락 1개 되어의 발가락 1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당한 기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1. 한쪽 논의 눈꺼물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까슨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순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스라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주의사항(비고) ♠

-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판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지판절 이상을 잃은 경 우를 말한다.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 한다.
-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 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 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하다
-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述(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 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시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 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6.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홍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